

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

제정	1981. 7. 1	조례 제 53호
개정	1982. 4. 26	조례 제 148호
	1984. 2. 21	조례 제 260호
	1986. 2. 14	조례 제 369호
	1991. 1. 5	조례 제 637호
	1992. 10. 9	조례 제 736호
	1995. 11. 11	조례 제 907호
	1998. 9. 23	조례 제1088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2. 11. 8	조례 제1293호
	2003. 11. 18	조례 제1323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	2010. 11. 25	조례 제173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7. 3. 12	조례 제2243호(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8. 8. 30	조례 제240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12. 21	조례 제2432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20. 3. 25	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23. 12. 28	조례 제305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급여법」 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8. 12. 21]

제2조(수입)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른 기금 담당관(이하 “기금담당관”이라 한다)은 「의료급여법」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·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·금액·기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8. 12. 21]

제3조(지출)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, 부당이득금, 구상금 및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영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(이하 “기금출납원”이라 한다)에게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광명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8. 12. 21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8>

[전문개정 2018. 12. 21]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 <개정 2018. 12. 21, 2020. 3. 25>

[중전 제9조에서 이동 2018. 12. 21]

제6조 삭제 <2018. 12. 21>

제7조 삭제 <2002. 11. 8>

제8조 삭제 <2002. 11. 8>

부칙

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2. 4. 2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4. 2. 2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6. 2. 1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1. 1. 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2. 10. 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5. 11. 1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9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,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2. 11. 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11. 1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1. 25 조례 제1731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2 까지 생략

⑥3 광명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의료급여 업무담당주사가”를 “해당업무 팀장이”로 한다.

⑥4 부터 ⑦9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3. 12 조례 제2243호,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8. 30 제240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6 까지 생략

③7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
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노인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㉘ 부터 ㉚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12. 21 조례 제243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
조례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12. 28 조례 제305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